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 등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근거마련 등〉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7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 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 검토의견	3
------------------	---

1.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3
2. 당사자 미동의 시 성만을 표기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6
3.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의 성명·전입일자 열람 및 교부 11

[참고]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시 성(姓)만 표기에 대한 신용정보협회의 의견	16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5.
3. 회부연월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물건소재지에 등록된 세대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시 발급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유자·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성(姓)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 2).

Ⅲ. 검토의견

1.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근거 마련

개정안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함)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생략)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u>자</u>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u>자</u>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다)는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①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②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의 위임을 받은 자, ③경매참가자·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 등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신청자>

1.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려는 자
 - 가.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 라.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 마.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또한, 현행법 시행령¹⁾은 현행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①열람·교부 신청서, ②신분증명서, ③신청자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2. 신청인이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하여 열람 및 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열람 및 교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024. 6. 18. 현행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신분증명서에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어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직접 전입세대신고서의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없고 내국인에게 위임하여야 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이 신분증명서에 포함되어,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또한 직접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함.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71호) 개정 이유서>

□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허용(안 제49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부동산 매매 등 거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을 신청할 수 없어 불편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거래·계약 시 편의 제고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현행법 시행령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에 필요한 서류’에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신청이 가능한 자’에 관한 규정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포함된다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등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신청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2. 당사자 미동의 시 성만을 표기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개정안은 경매참가자·신용조사회사 등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세대주 등의 성(姓)만을 표기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및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③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③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성명 중 성(姓)만을 표기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현행법은 ①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사회사²⁾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³⁾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③대통령령에 따른 금융회사등⁴⁾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에 전입세대확인서를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4)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30개의 금융회사가 이에 해당함.

열람·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동거인의 성명 전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 및 금융회사 등이 전입세대확인서를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음.

<전입세대확인서 양식>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표시됨 ☐ / 표시되지 않음 ☐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세대순번	세대주/ 최초 전입자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동거인 사항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담당자 의견									

개정안은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성명 중 성(姓)만을 표기하도록 하여 세대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의 근거(현행법 제29조의2)가 현행법에 규정되기 이전의 현행법 시행규칙⁵⁾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 및 금융회사 등이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전입세대 열람 시 성(姓)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성(姓)만 표기되는 경우 신용조사회사 및 금융회사 등이 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시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임차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임차인 또는 담보권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현행법 시행규칙은 세대주 및 동거인의 성명 모두를 표시하도록 개정되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성(姓)만을 표시함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과 성명 전체를 표시함에 따른 임차인 및 담보권자 보호에 따른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경매참가자, 감정평가법인, 신용조사회사, 금융회사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시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성명 중 성(姓)만을 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⁶⁾

<신청인의 업무성격에 따른 성명 전체 표기 필요 여부>

1. **경매참가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 또는 시설(해당 물건지)에 전입해 있는 세대의 현황만 확인하면 되므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姓)만 표기**
2. **신용조사회사**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물건지에 대출을 실행하려는 대상의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모두 표기 필요하나,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 **당해 세대 외에는 성(姓)만 표기**
 - 1) 해당 물건지에 **거주 요건이 아닌** 경우: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姓)만 표기
 - 2) 해당 물건지에 **거주가 요건인** 경우
 - 세대가 1개인 경우: 대출 실행 당사자인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모두 표기
 - 세대가 2개 이상인 경우: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 당해 세대의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만 표기, 그 외의 세대는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성(姓)만 표기
3.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해당 물건지에 전입해 있는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 세대의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모두 표기**, 그 외의 세대는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성(姓)만 표기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각 신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목적을 고려하여, 당사자 동의가 없는 경우 성명 전체를 표기할지 여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p. 16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시 성(姓)만 표기에 대한 신용정보협회의 의견] 참고

3.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의 성명·전입일자 열람 및 교부

개정안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시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u><신설></u>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④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이 경우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법령은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 최초 전입세대원의 전입일자는 표시하도록 하지만 성명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입세대확인서 양식>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표시됨 ☐ / 표시되지 않음 ☐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세대순번	세대주/ 최초 전입자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동거인 사항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최초 전입자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담당자 의견									

개정안과 같이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 해당 세대원의 성명·전입일자를 열람·교부하도록 한 규정 또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의 근거(현행법 제29조의2)가 현행법에 규정되기 이전의 현행법 시행규칙7)에서 규정하고 있었

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으나 현재에는 삭제되어 있음.

< 舊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입세대열람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 신청주소:									
순번	세대주 성명	전입 일자	등록 구분	최초 전입자	전입 일자	등록 구분	동거 인수	동거인사항	
	주소							순번	성명
1	김○○	2024.△.△	거주자	이□□	2023.◇.◇	거주자			
서울특별시 ▲▲구 ■■■로									

전입세대확인서에서 최초 전입 세대원의 전입일자를 표기하는 이유는 대항력 등 권리관계 분석 시 세대원의 전입일자가 세대주보다 빠른 경우 최초전입일자를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OO아파트에 임차인 A씨가 2024년 5월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중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2024년 9월에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같은 해 12월에 A씨가 B씨와 혼인을 하면서 세대주를 A씨에서 B씨로 변경한 경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B씨의 전입신고일(2024년 12월)이 나타나게 됨. 만약 세대주 B씨를 기준으로 권리분석을 하게 되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2024년 9월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세대주 B씨의 전입일자가 아닌 세대원이 된 A씨의 전입신고일 즉, 그 세대에서의 최초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되므로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게 됨⁸⁾.

개정안은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현재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만을 표시하더라도 대항력 등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개정안 제29조의2제3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성(姓)만을 표시하도록 하는데 최초 전입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에 대

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해서도 각 신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목적을 고려하여, 당사자 동의가 없는 경우 성명 전체를 표기할지 여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

[참고]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시 성(姓)만 표기에 대한 신용정보협회의 의견

□주요 건의 내용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소유자 및 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성만 표기하게 되게 된다면 아래(건의 사유)의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법 개정 검토 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적, 제도적 그리고 고객 편의성 측면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성명 전체를 표기 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의견 제출

□건의 사유

○ 법적 지위 불안정

-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소유자 및 담보권자 등과의 권리 관계에 대한 법적 지위 명확화를 위함
- 그런데, 임차인의 정확한 성명 표기 없이 '성'만 표기 할 경우 임차인 동일성에 대한 확인 어려워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사기 등 파생되는 부정적 효과가 예상됨

○ 금융회사의 혼란 발생

- 법률 개정으로 인해 '성'만 표기될 경우, 전입된 임차인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금융회사의 혼란이 발생하게 됨

○ 고객 편의 측면

-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출신청인으로부터 성명 전체가 표기된 전입세대 열람 서류를 징구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됨